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 10 월 30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 이룸투자자문
(영문명) IROOM INVESTMENT
(홈페이지) <http://www.iroomi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(여의도동, 대영빌딩)
(전 화) 02-761-1694

대 표 이 사 : 조 세 훈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대표이사
(성 명) 조세훈 (전 화) 02-761-1694

작 성 자 : (직 책) 대리
(성 명) 유진숙 (전 화) 02-761-1694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11호)

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	
-사업목적 추가		전문사모 집합투자업
-사업목적 삭제		
-사업목적 변경	변경전	1.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국내외 기업,경제,산업 및 증권,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	변경후	1.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국내외 기업,경제,산업 및 증권,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1.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2. 변경 주요이유		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249조의 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
3. 사업 추진일정		미정
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15.10.16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-
	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불참
5.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		2015.10.30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